

◆군산시공고 제2011-747호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05월 16일

군산시장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2010.12.31)에 따라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 관한 조례의 위임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주정차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0조의2제2항』 → 『제12조제2항』 로 일부개정 (안 제1조) ⇒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 착용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
 나. 적용조례에 맞게 『군산시정월외상근인력관리규정』 → 『군산시장근인력관리규정』 로 일부개정 (안 제4조 제1항 1호) ⇒ 주정차단속공무원의 구분시 적용조례명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 [참조 : 교통행정과장, 우)573-730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전화 : 063)450-6592, FAX : 063)450-6404, E-mail : monk45@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단속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주·정차단속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제복”이라 함은”을 ““제복”이란”으로, “단속공무원”을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에 규정한 기능직공무원 및 『군산시상근인력관리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단순노무원인 경우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모자는 시”를 “모자는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사유”를 “그 밖의 사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u>주·정차단속공무원</u> (이하 “<u>단속공무원</u>” 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도로교통법 시행령</u>』 제12조제2항에 따라 <u>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제복</u>” 이라 함은 <u>주정차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모자, 근무복, 신발, 완장, 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물</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u>제복</u>” 이란 ----- <u>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 이라 한다)</u>----- ----- -----.</p>
<p>제4조(제복의 종류) ① <u>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u></p> <p>1. <u>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에 규정한 기능직공무원 및 군산시정원회상근인력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u> <u>의한 단순노무원인 경우</u></p> <p>가. (생략)</p> <p>나. <u>모자는 시의 휘장으로 장식한다.</u></p>	<p>제4조(제복의 종류) ① ----- ----- -----.</p> <p>1. 『<u>지방공무원임용령</u>』 별표2에 <u>규정한 기능직공무원 및 『군산시상근인력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u> <u>따른 단순노무원인 경우</u></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모자는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u>-----.</p>

다. ~ 마. (생략)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제복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 4. (생략)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등 기타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제5조(착용구분) -----
----- 각 호-----
-----.

1. -----
---- 제6조제2항에 따라 -----

-----.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의
사유-----

-----.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1-754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등

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유도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 (안 제2조)

-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과 공동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인 경우까지 포함
- 감면차량을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8조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대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세액 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다.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개정(안 제11조)
-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인용조문 정리(안 보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
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
orea.kr)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
든 가능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최광식 (전화 063-450-
4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으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본문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보칙

제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p>	<p>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장애인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 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p> <p>----- 60일 -----</p>

현 행	개 정 안
<p>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4. (생략)</p> <p>② (생략)</p>	<p>-----</p> <p>-----</p> <p>-.</p> <p>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u>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u>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전라북도 <u>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u>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p>	<p>제11조(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p> <p>-----</p> <p>-----</p> <p>----- <u>경제통상진흥원이</u></p> <p>-----</p> <p>-----</p> <p>-----</p> <p>----- <u>경제통상진흥원</u>-----</p> <p>-----.</p>
<p><신 설></p>	<p>제1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보칙</u></p> <p>제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u></p> <p>2. <u>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u></p> <p style="text-align: center;"><u>보칙</u></p> <p>제2조(감면 제외대상)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p>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1 - 770호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5. 16.

군 산 시 장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우수인재 육성과 교사의 사기 진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으로 해당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변경하여 지방재정법의 관련조문과 부합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전화 : 450-4216, FAX : 450-4278)

전자우편 : kannae00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계(전화 450-42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14조”를 “제1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정출연금) 군산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재정출연금) ----- ----- 제17조----- ----- ----- -----.

군산시 고시 제2011-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12)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12)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5월 6일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경암동 608-1외 9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12)
 - 2) 명 칭 : 경암동 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폭원(m)	총연장(m)	금회시행구간(m)	실시계획면적(㎡)	비 고
도시계획도로	소로 1-312	10	260	260	2,620.3	
합 계					2,620.3	

-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1호
 - 2) 사업시행자 성명 : (유)현대주택건설 대표 조성석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2008. 10. ~ 2011. 4. 30
 - 변 경 : 2008. 10. ~ 2014. 4. 30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붙임참조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무상양도시설	경암동 616	35,734.3	679.9	도	군산시	
무상귀속시설	경암동 608-1외 10	13,597.1	961.9	대	현대주택건설 외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순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변경전	군산시경암동	608-1	대	695.9	60.7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번지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변경후	군산시경암동	608-1	대	695.9	60.7	유한회사현대주택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1호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	
2	변경전	군산시경암동	608-3	대	2,430.1	50.2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번지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변경후	군산시경암동	608-3	대	2,430.1	50.2	유한회사현대주택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1호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나운동지점)	근저당	
3	변경전	군산시경암동	608-4	대	525.4	46.0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번지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변경후	군산시경암동	608-4	대	525.4	46.0	유한회사현대주택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1호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	
4	변경전	군산시경암동	610-4	대	1,460.1	300.7	(주)미송종합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2호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	채무자-(유)현대주택건설
	변경후	군산시경암동	610-4	대	1,460.1	300.7	(주)미송종합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세아아파트 102호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장항지점)	근저당	채무자-(유)현대주택건설
5	변경전	군산시경암동	610-9	대	939.6	97.5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조촌동 2번지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변경후	군산시경암동	610-9	대	939.6	97.5	유한회사현대주택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1호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	
6	변경전	군산시경암동	610-14	대	284.4	17.8	(주)미송종합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2호				
	변경후	군산시경암동	610-14	대	284.4	17.8	(주)미송종합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2호				
7	변경전	군산시경암동	610-15	대	210.0	88.2	(주)미송종합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2호				
	변경후	군산시경암동	610-15	대	210.0	88.2	(주)미송종합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2호				
8	변경전	군산시경암동	610-16	대	213.1	117.7	(주)미송종합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2호				
	변경후	군산시경암동	610-16	대	213.1	117.7	(주)미송종합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2호				
9	변경전	군산시경암동	610-17	대	232.1	26.6	(주)미송종합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2호				
	변경후	군산시경암동	610-17	대	232.1	26.6	(주)미송종합건설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2호				
10	변경전	군산시경암동	616	도	35734.3	1,814.9	군산시					
	변경후	군산시경암동	616	도	35734.3	1,814.9	군산시					
		계	10필지		42,725	2,620.3						

군산시 고시 제2011- 29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5. 04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11 - 40(2011.05.04)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주소 성명 : 붙임문서 참조
- ③ 허가목적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 ④ 허가장소 : 붙임문서 참조
- ⑤ 면 적 : 붙임문서 참조
- ⑥ 허가기간 : 붙임문서 참조
- ⑦ 붙 임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승인)증. 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허가연월일	신 청 인	허가 번호	신 청 위 치	점용 면적 (㎡)	점용목적	허가기간
2011.5.4	(주)33새만금 해상관광	2010- 00040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인근 (새만금제3공구신시도선착장 방파호안 외측 전면해상)	490	관광유람선사 업을위한선착 장접안시설설 치(부선→콘크 리트블록식)	10.9.17~ '11.8.31

군산시 고시 제2011-30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고시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군 산 시 장

정비기간	2011년 5월 ~2016년 12월		
대상소하천	총5개(주요소하천 : 구암천외 4개 소하천)		
총사업비	38,012,692천원	총연장	5.29km
목적 및 정비효과	재해예방	사업시행으로 39.2ha의 침수예상구역 보호	
	생활환경개선	소하천 및 인근의 자연적 소하천 공간 창출	

열람서류 :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

2. 소하천 종합도(50,000분의 1지형도)

열람장소 :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 450-4494)

군산시 고시 제2011-31호

도시계획시설(광장,학교,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광장,학교,도로)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5월 13일

1. 도시계획시설(광장)

가.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	제12광장	교통광장	미룡동 대1-5호선 시점	57,341	감)129	57,212	전북고111 (95.6.29)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제12광장	면적감소(129) 57,341㎡ → 57,212㎡	램프설치에 따른 가감속차선 추가로 광장부지 감소

2. 도시계획시설(학교)

가.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군산 대학교	대학교	미룡동 729-2일원	822,422	감)330	822,092	전북고56 (91.2.9)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군산대학교	면적감소(330) 822,422㎡ → 822,092㎡	램프설치에 따른 가감속차선 추가로 학교부지 감소

3. 도시계획시설(도로)

가.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정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류	5	35	주간선	2,585	나운동 12호 광장	나운동 대1-2	일반 도로	군산 대학	건고37 (76.3.27)	
변경	대로	1류	5	35	주간선	2,585	나운동 12호 광장	나운동 대1-2	일반 도로	군산 대학	건고37 (76.3.27)	

가.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5	대로 1-5	L=2,585m B=35→35~45m(일부구간)	가감속차선 추가로 인한 도로일부구간 폭원 확장

4. 도시계획시설(광장, 학교, 도로) 변경결정 지형도면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1-33호

지형도면(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의한 소하천구역(예정지)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05월 일

군 산 시 장

1. 소하천구역(예정지)

하천명	하 천 구 간		거리 (km)	비 고
	기 점	종 점		
구 암 천	조촌동 671-32	구암동 서해안	1.26	예정지
마 동 천	성산면 도암리 355-8	성산면 고봉리 344-28	1.17	
와 촌 천	나포면 장상리 148-2	나포면 장상리 340-3	0.96	
내무장천	서수면 축동리 709	서수면 축동리 726-6	1.03	예정지
서 원 천	임피면 미원리 44-6	임피면 읍내리 739-11	0.87	예정지

2. 소하천구역(예정지) 지형도면 : 실음생략. 끝.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1- 34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5.12

1. 점사용자의 주소 : 군산시 소룡동 730번지
2. 점사용자의 성명 : (주)33새만금해상관광
3. 공사내용 : 접안시설(6.0B * 40.5L), 콘크리트 블록식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1. 5. 12 ~ 2011. 6. 20
5. 점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2011. 5. 12

군산시 공고 제2011-725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대로1-2)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대로1-2)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5월 6일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공영사업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확대)
 - 당 초 : 군산시 지곡동 263-1번지 일원
 - 변 경 : 군산시 나운동 137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대로1-2) 사업
 - 2) 명 칭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미개설폭 변경개설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 정		실시계획(m ²)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도 로	대로1-2	35	4,780	5~12	5~12	368	550	3,490	5,004	
소 계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공영사업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2009. 10. ~ 2012. 12. 31.
 - 변 경 : 2009. 10. ~ 2013.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0-4445) 및 공영사업과(45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당초	지곡동	263-1	도	12,710	301		국(국토해양부)			
	변경	지곡동	263-1	도	12,710	301		국(국토해양부)			
2	당초	지곡동	285-1	도	5,770	1,053		국(국토해양부)			
	변경	지곡동	285-1	도	5,770	1,053		국(국토해양부)			
3	당초	지곡동	285-11	전	136	136		군산시			
	변경	지곡동	285-11	전	136	136		군산시			
4	당초	지곡동	285-19	전	466	334		국(제정경제부)			
	변경	지곡동	285-19	전	466	334		국(제정경제부)			
5	당초	지곡동	285-33	도	824	381		국(국토해양부)			
	변경	지곡동	285-33	도	824	381		국(국토해양부)			
6	당초	지곡동	285-41	도	1,194	145		국(국토해양부)			
	변경	지곡동	285-41	도	1,194	145		국(국토해양부)			
7	당초	지곡동	285-42	도	2,184	774		국(국토해양부)			
	변경	지곡동	285-42	도	2,184	774		국(국토해양부)			
8	당초	지곡동	285-43	임	13	13		군산시			
	변경	지곡동	285-43	임	13	13		군산시			
9	당초	지곡동	285-44	도	1,542	353		국(국토해양부)			
	변경	지곡동	285-44	도	1,542	353		국(국토해양부)			
10	당초	나운동	산193-4	도				국(국토해양부)			
	변경	나운동	산193-4	도	313	239		국(국토해양부)			
11	당초	나운동	136-5	도			군산시 수송동 729	강삼봉			
	변경	나운동	136-5	도	17	5	군산시 수송동 729	강삼봉			
12	당초	나운동	137	도				국(국토해양부)			
	변경	나운동	137	도	6,065	1,013		국(국토해양부)			
13	당초	나운동	137-2	도			서울시 도봉구 미아5동 445-17	박성자 외 1인			
	변경	나운동	137-2	도	264	178	서울시 도봉구 미아5동 445-17	박성자 외 1인			
14	당초	나운동	137-5	도				국(국토해양부)			
	변경	나운동	137-5	도	793	18		국(국토해양부)			
15	당초	나운동	137-11	임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변경	나운동	137-11	임	61	61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4-8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계	당초				24,839	3,490					
	변경				32,352	5,004					

201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군산시 공고제 2011 -736호

2011/2012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 수산업법 제4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2011/2012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수면번호	어업의종류	품종	면적 (ha)	위 치	개발방법	비 고 (조 건)
①	해조류양식	김	250	비안도해역	한정어업면허	기존어장 제5570호,제5571호, 제5530호 대체개발
②	"	"	90	무녀도해역	"	기존어장 제5529호,제5574호 대체개발(인어촌계 협의조건)
③	"	"	70	"	"	기존어장 제5528호, 제5574호 대체개발
④	"	"	490	선유도해역	"	기존어장 제5565호, 제5557호 대체개발

2.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조건

- 어업면허를 처분 시에는 수산업법, 동법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어장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선박항해 및 어장간 거리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국가 공익사업이 계획 고시된 수면이나 각종 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조류소통이 저해되는 수면, 어장이 밀집되어 어업생산량 저하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 분쟁 및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해소한 후 개발하고 해소되지 않을 시는 면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정어업 면허는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개발가능 의견 또는 협의 완료된 건만 면허처분하고 제한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어장개발계획이 금회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각종사업(국제해양관광 단지조성, 새

만금 신항만개발, 새만금 내부개발 해사토 채취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어업 면허를 처분 시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개발하고 면허기간을 최소화 하여 처분하는 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WTO/DDA, FTA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경쟁력 취약품목, 중요확보곤란 및 수급불균형으로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개발하여야 한다.

3.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 제출기간 : 2011. 5. 6 ~ 2011. 6. 5.
- 제출처 : 군산시청 민원봉사과(1층) 접수창구
- 제출서류
 - 1) 어업면허 우선순위 신청서
 - 2)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에 한한다.)
 -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4)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3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6) 여권사본 (외국인 또는 국외법인에 한한다.)

4. 기타사항

- 승인된 수면별 어장위치도는 우리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군산시 해양수산과 (☎ 063-450-4413)

2011. 5. 6.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 2011 - 756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개간업무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 건설과 농촌개발계, 나포면사무소, 서수면사무소에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 5. 16.

군 산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밭기반 조성 (옥수수 재배)
2. 사업 위치 :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산145 외 3필지
3. 지목 및 지적 : 임야 21,661㎡
4. 사업시행면적 : 19,870㎡
5. 사업비소요액 : 자부담 24,000천원
6. 사업예정기간 : 2011년 5월 ~ 2012년 4월
7. 공고기간 : 2011년 5월 16일 ~ 2011년 6월 14일
8. 사업효과 : 농지확대 및 농업소득
9. 사업시행자 :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150-1 김운중

※ 기타 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군산시 건설과 농촌개발계 (☎450-4371) 또는 나포면사무소(☎450-6009), 서수면사무소(☎450-6005)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신청지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산145 외3필지

2. 사업의 목적

옥수수재배

3. 사업 신청인

주 소 :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150-1
 신청인(법인명) : 김운중
 주민(법인)등록번호 :

4. 산지전용 면적조서

(단위:M2)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신 청 면 적			제 외 면 적	비 고
				대 지	도 로	계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산145	임	2,281	2,281		2,281	-	
	산146	임	50	50		50	-	
	산147	임	99	99		99	-	
	산148	임	19,231	17,440		17,440	1,791	
계	4 필지		21,661	19,870		19,870	1,791	

5. 사업내용

본 지역은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산145 외 3필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금번 신청지에 옥수수재배를 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지역사회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6. 사업장내의 토사처리계획

사업 승인을 득한후 부지 조성공사 시행시, 절·성토 작업으로 인한 사토는 현장 부지내에 처리할 계획임.

7. 공사중 피해방지계획

공사중 교통소통 및 비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인근주민 및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겠음.

(공사중 피해방지사항 및 방지대책 별첨)

8.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

- 1) 본인 직영으로 운영계획
- 2) 준공 후 사업자가 시설유지 및 보수관리예정

9. 공 사 규 모

1) 토목 공사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부 지 조 성	토공사	흙 깎 기			1,921.00		m ³				
		흙 쌓 기			1,436.00		m ³				
		벌개제근			20,495.00		m ²				
		면고르기			16,455.00		m ²				
		작업로			230.00		M				
	배수공	토사배수로		W=1.5m		434.00		M			
		콘크리트배수로		W=1.6m		435.00		M			
		침사지설치		3.0*2.5		3.00		개소			
PE관			D800mm		24.00		M				

2) 주변경관 조성공사

- 1)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공사및 배수시설 및 자연배수 시공
- 2) 완만한 경사시공 및 비탈면에 구조물 및 비탈보호 시공

11. 급수 및 배수, 오수처리시설

- 1) 해당사항없음.
- 2) 부지내 토사배수로 및 콘크리트배수로, PE관 설치 후 기존수로에 연결 배수함.

3) 해당사항없음.

12. 투자 소요액

종자구입비	:	12,000,000	원
대지조성공사비	:	8,000,000	원
경영비	:	4,000,000	원
계	:	24,000,000	원

13. 자금 조달계획

자금 조달 (원인자 100% 부담)

본인 부담금	:	24,000,000	원
은행 융자금	:		원
계	:	24,000,000	원

14. 사업 기간

공사 착공	:	2011년 5월 일
공사 준공	:	2012년 4월 일

영 농 계 획 서

1. 목적

본 개간지는 주변여건이 거의 농지(경지정리 및 전, 답등)로써 그동안 임야로써 수종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소나무류와 잡목등으로 이루어진 환경사지역으로써,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농가 소득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절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옥수수를 재배함으로써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케 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농민으로써 이윤을 얻어 가정경제부흥은 물론 지역경제에 기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면적

(단위 : m²)

개간면적	감보면적	실경작면적	비고
19,870	-	19,870	

3. 생산농작물

(단위 : m²)

생산면적	농작물별면적	비고
	옥수수재배	
19,870	19,870	

4. 연가별 경작계획

년 재배 작물	2011년						2012년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옥수수 재배														

5. 영농방법

현재 우리 나라의 영농방법은 기계화와 과학화 로 산업이 발달된 나라로써 본 개간지는 현재의 지형상태나
 위치 일조권을 감안하고 주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영농방법을 기계화하여 고도의 영농방법을 동원하여
 인력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다한 농약사용 등으로 농작물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본 개간지는
 우리 고유의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생산하여 신선하고 건강에 유익한 생산지가 되도록 하고자 함.

6. 수지채산계획(본 계획은 생산 불가 변동에 의거 변할 수 있음)

ㄱ. 현재임야로서의 경제 가치는 전혀 없음

ㄴ. 수익계산

금액 재배작물	수입계산			비고
	면적(m ²)	단가(원)	금액(원)	
옥수수재배	19,870	2,500	49,675,000	
합계	19,870		49,675,000	

ㄷ. 영농경비계산

금액 재배작물	지출계산			비고
	면적(m ²)	단가(원)	금액(원)	
지출비	19,870	1,000	19,870,000	
합계	19,870		19,870,000	

르. 연간 순수계산

내력 년별	수입금액	지출경비	순수익계	순수익률	비 고
4년	49,675,000	19,870,000	29,805,000	60%	
합계	49,675,000	19,870,000	29,805,000	60%	

7. 결과

상위와 같은 영농계획에 의거 하여 개간 목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의 임야상태 보다는 토지 생산성이

수배에 이르므로 생산적 국토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